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24호)

2026. 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가축방역관 임명 근거 신설	3
2. 가축방역관 업무범위 개편	6
3. 방역조치 권한 및 책임체계 정비	15
4.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 명확화	20
5. 심리치료 지원대상 확대	24
6. 위탁 및 벌칙·과태료 조항 정비	2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6. 30.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반복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역업무가 확대되고 있으며, 농장·축산관계시설·차량·사람 등을 통한 병원체 전파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출입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채취 등 다양한 현장업무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정된 수의인력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거래기록 열람·점검, 소독설비·방역시설 확인, 출입기록 확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축사 등의 소독 등 반복적 확인·점검 업무의 수행주체를 정비하되,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가축방역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범위와 현장 책임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그 밖에 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의 출입·검사 대상에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침습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료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종업원을 포함하고, 살처분·사체처분 관련 책임체계와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대상을 정비하며, 시료채취 업무의 위탁대상, 벌칙 적용상 공무원 의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제16조제4항, 제17조제7항·제8항,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6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제3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제2호, 제55조제2항, 제57조제6호, 제58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3호의13부터 제3호의15까지).

Ⅲ. 검토의견

1. 가축방역관 임명 근거 신설

개정안은 가축방역관에 대한 임명 및 위촉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7조제2항).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가축방역관의 자격요건을 수의사로 정해두었을 뿐, 그 외에 가축방역관의 임명·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가축방역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만 임명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 수의사를 위촉하는 방식도 가능한 것인지 그 구성 방식이 법률에는 나타나지 않고 하위법령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음.

개정안은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이하 “가축방역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으로서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중에서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진료업무를 위촉 받은 수의사중에서 위촉한다.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가축방역관이 공무원 신분(임명)뿐 아니라 민간 수의사(위촉)로도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상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정비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은 임명·위촉의 주체를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가축방역관을 둘 수 있는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임명·위촉의 주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기관"이라는 표현이 국가 소속의 검역본부·국립축산과학원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하나, 국가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이 조문에서 빠짐으로써 현행법과 개정안의 문언이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같이 현행법의 문언과 일치시키는 방향의 자구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현행	개정안
제7조(가축방역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은 <u>수의사여야 한다.</u>	제7조(가축방역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수의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2. 가축방역관 업무범위 개편

개정안은 소독설비·방역시설 확인, 출입기록 확인, 소독 실시 등의 업무수행주체에서 "가축방역관"을 삭제하고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사"로 정비하는 내용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위 업무들은 소독설비·방역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출입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성격의 업무로서 수의학적 진단이나 임상적 판단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러한 업무까지 가축방역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정작 죽거나 병든 가축의 임상관찰, 가축 전염병 감염 여부 판단, 살처분 대상 가축의 병성감정 등 수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 가축방역관의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력이 정형화된 확인·점검성 업무에 상당 부분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업무의 수행주체를 공무원·가축방역사가 담당하도록 조정하여 가축방역관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현행법상 가축방역관 수행 업무 및 개정안 수행주체 비교 】

조문	업무내용	현행법상 수행주체	개정안상 수행주체
제7조제3항 및 제4항	오염 의심 시 출입·검사·질문, 예찰을 위한 시료채취	가축방역관	가축방역관
제7조의2 (신설)	비침습적 범위의 시료채취 등	(신설)	가축방역관이 아닌 소속 공무원
제16조제4항	가축 또는 가축의 알 출입·거래기록 열람 또는 점검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사
제17조제7항	소독설비·방역시설 관련 사항 확인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사
제17조제8항	소독설비·방역시설 정기점검 (연 1회 이상)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사
제17조의2 제2항	출입기록 내용 확인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사
제17조의6 제2항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가축방역관	소속 공무원 (단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은 가축방역관 유지)
제25조제2항	축사 등 소속 실시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사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개정안은 가축방역관을 업무 주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서 가축방역관이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더불어 업무 주체를 조정하려는 개정 목적은 가축방역관을

배제하지 않고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관이 조문상 업무 주체로 남아 있으면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가축방역관에게 해당 업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므로, 오히려 가축방역관을 남겨두는 것이 가축방역관의 감소를 가속화시키고 업무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따라서 가축방역관을 업무주체에서 배제하면 개별 사안에서의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과, 가축방역관을 업무주체에 존치할 경우 현장에서 그에게 업무가 계속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개정 방식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둘째, 개정안에 따라 소독설비·방역시설 확인, 출입기록 확인, 소독 실시 등의 업무 수행 주체가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사로 조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특히 다수의 조문에 걸쳐 업무수행주체가 동시에 재편되는 것으로서 새로 업무를 맡게 되는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사가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함께, 해당 업

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지침 마련 등 사전 준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의직렬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가축방역사²⁾로 위촉하여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이들이 담당하는 현장 확인·점검 등의 업무가 확대될 경우 본래 업무에 더하여 수행하는 가축방역 업무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방정부의 가축방역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의 전문성이 불필요한 업무는 소속 공무원과 가축방역사 중심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가축방역관이 가축질병 판단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8조(가축방역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②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제7조제3항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 ③ 가축방역사의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및 예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가축방역사의 자격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안
제7조(가축방역관) ① (생략)	제7조(가축방역관) ① (현행과 같음)
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가축질병의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③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도축장·집유장(集乳場) 등 작업장</u>	3. <u>도축장·집유장(集乳場)·사료제조시설 등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④ 가축방역관이 제3항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u>검사 및 예찰</u> 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 <u>검사, 예찰 및 시료채취를</u>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7조의2(가축방역업무 수행 공무원의 시료채취 등) ① 지방</u>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
③ (생 략)

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이 아
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
7조제3항 각 호의 장소에 출입
하여 시료채취에 필요한 사항
을 확인하게 하거나, 가축의
신체에 채혈 등 침습적(侵襲
的) 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시료 중 필요한 최
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
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확인 또는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
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적으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관에게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7조(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① ~ ⑥ (생략)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⑧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 ⑫ (생략)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

④ -----

---가축방역사-----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공무원-----

-----.

1. ~ 5. (현행과 같음)

⑧ -----
-----공무원-----

-----.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② _____

공무원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 -----.
-----------------------------------	-----------------

3. 방역조치 권한 및 책임체계 정비

개정안은 이동제한명령의 예외적 이동승인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치시키고, 살처분 및 사체 처리의 권한과 책임 주체를 가축방역관 개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임(안 제19조 등).

현행법은 이동제한 명령의 주체(시장·군수·구청장)와 이에 대한 예외적 이동승인의 주체(시·도 가축방역기관장)가 다르고, 살처분·사체 처리의 권한과 책임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가축방역관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어 방역조치의 권한·책임 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방역조치의 권한 및 책임 체계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자의 살처분 명령 미이행 등의 경우, 살처분 명령 이행 주체를 현행 "가축방역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가축방역관이 살처분을 시행하도록 한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됨.

살처분은 병원체 확산 방지를 위한 인도적·수의학적 방법(마취·약물 처리 등)이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춘 업무인데, 개정 후

에는 살처분 명령의 이행 주체(시장·군수·구청장)만 규정될 뿐 실제 집행을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언상 근거가 사라지게 되어 수의학적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살처분을 직접 수행하더라도 법문상 저촉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살처분이 갖는 전문성·인도적 처리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제 집행주체에 관한 최소한의 근거를 법률에 남겨두거나 하위법령을 통해 집행주체·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한수의사회는 살처분 명령은 수의사의 감독 아래 인도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사항인 동시에 재산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가축방역관을 지휘책임자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조치의 권한 및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

없이 해당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생략)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생략)

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살처분하여야-----가축방역관이 병성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

	-----.
1. ~ 5의3. (생략)	1. ~ 5의3. (현행과 같음)
6. 제22조제2항 본문(<u>가축방역</u> <u>관은 제외한다</u>)·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 <u>가축 사체</u> <u>의 소유자등에 관한 부분에</u> <u>한정한다</u> -----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4.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 명확화

개정안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에 가축의 소유자등 및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종업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9조의2).

현행법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으로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만 두고 있어, 가축의 소유자등과 해당 시설의 종업원은 명령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³⁾

그러나 가축의 소유자등과 종업원은 해당 시설에 상시 출입하며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자로서 병원체 전파 위험이 높아, 전파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대한 이동제한이라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목적을 고려할 때 명령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음.

아울러 실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 공고문을 살펴보면 "농장 관리자, 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도 이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2.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시설의 종업원 또한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개정안은 실무상 이미 다루어져 온 대상을 법률상 명확히 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예시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125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강원 철원군 및 인접 3개 시·군(강원 화천, 경기 연천·포천)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 가. 축산농장 : 돼지농장
-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 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6. 2. 20. 15:00부터 2026. 2. 21. 15: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

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일시이동중지는 2026. 2. 20. 15: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2. 20. 17: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다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유에도 해당하는 등 위반 시 제재의 정도가 상당하므로 신규로 명령대상에 포함되는 가축 소유자등·종업원이 자신이 명령대상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명령 공고·고지 시 대상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는 등 실효적인 고지 방안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 ----- ----- ----- ----- ----- ----- -----

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 ⑥ (생략)

-----가축,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및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종업원,-----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 및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종업원-----

④ ~ ⑥ (현행과 같음)

5. 심리치료 지원대상 확대

개정안은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대상을 현행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제1항제2호)에서 “가축의 살처분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현장을 지휘·감독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임(안 제49조의2).

현행법은 심리치료 지원대상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실제 살처분 업무에는 이들 외에 용역업체 등 민간 소속 인력도 참여하고 있음.

그럼에도 법률에는 이러한 민간 인력이 지원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만으로는 쉽게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지원 대상을 신분이 아닌 업무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령⁴⁾에 따르면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매몰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이미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살처분 등을 직접 수행한 사람은 그 신분에 상관없이 현행 체계에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다만 하위 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대상이 지원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반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 국민에게 지원 대상을 보다 분명히 알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얻는 인지도·접근성 제고 효과와 이미 하위법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포섭되어 있어 별도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비교하여, 지원 대상을 법률에 명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둘째, 현행법에 따르면 살처분 외에도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
1. 제20조제1항·제2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및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2. 제20조제3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물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의3(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서 “자원봉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자원봉사자 및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소각, 매물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4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경우에도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제4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 역시 살처분만큼 심리적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로서 지원이 필요함에도, 사체처리 관련 지원대상이 살처분과 동일한 대상(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고용인,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으로 열거)으로 규정되어 있어 살처분 지원 대상과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바, 함께 개정할 필요가 없는지 고려가 필요함.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작업자 등 살처분 업무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정신적 트라우마가 더 클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힘.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립 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0조제3항 본문(제28조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에 따라 <u>가축을 살처분한</u> <u>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u> <u>관계 공무원</u> 3.·4. (생략) ② ~ ⑥ (생략)	제49조의2(심리적·정신적 치료)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u>가축의 살처분 업</u> <u>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현장</u> <u>을 지휘·감독한 사람</u> 3.·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6. 위탁 및 벌칙 조항 정비

개정안은 시료채취 업무의 위탁대상을 확대하고, 위촉된 가축방역관에게 뇌물죄 관련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며, 위탁받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 (안 제55조 등).

현행법은 시료채취 업무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수의사회 등이 속하는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축방역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업무 부담이 높은 시료채취 업무 위탁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병성감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전문기관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을 시료채취 업무 위탁기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인력·시설 등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지정 이후에도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그 내용이 통보되어 관리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법령에 따른 지정·관리를 받고 있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시료채취 업무를 위탁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개정안은 위촉된 가축방역관에게 뇌물죄 관련 규정(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벌칙 적용상 공무원 의제 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위촉된 가축방역관은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그러나 위촉된 가축방역관 또한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공무원 신분의 가축방역관과 동일하게 예찰을 위한 시료채취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직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뇌물죄 관련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정의로 판단됨.

다만 이에 대하여 대한수의사회는 공수의의 안정적인 방역 업무 수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⁵⁾·업무방해죄⁶⁾ 등의 공무원 의제 적용 조항도 함께 마련하여, 책임이 부과되는 만큼 권리·보호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5)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6)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음.

아울러 현행법은 가축방역관·가축방역사의 검사·예찰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받은 단체 소속 직원이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하다가 거부·방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입법공백이 있었음.

방역인력 부족에 따라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위탁대상을 넓히고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과태료 근거를 함께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인력 부족에 대응한 위탁대상 확대 및 관련 규정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힘.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⁷⁾

7)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현행	개정안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7조제3항의 검사 업 무 중 시료 채취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 ----- ---- <u>축산관련단체 또는 가축병 성감정실시기관</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u> <u>제5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u> <u>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u> <u>체의 임직원</u> 은 「형법」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제5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u>에 해당하는 사람</u> ----- ----- ----- ----- ----- --.
<신설>	1.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u>가축방역관</u>
<신설>	2.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u> <u>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u> <u>장이 제55조제2항 또는 제3</u> <u>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u> <u>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u>

법률 제2150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제1항에도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우선
적용한다.
1. ~ 3의12. (생 략)
3의13. 제7조제4항(제8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신 설>

<신 설>

직원
법률 제2150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6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의12. (현행과 같음)
3의13. -----

-----예찰, 시
료채취를-----
3의14. 제7조의2제2항을 위반
하여 소속 공무원의 출입, 확
인 또는 시료채취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한 자
3의15.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
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단
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이 수
행하는 시료채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4. ~ 6. (생략) ③ · ④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1

연도별 지방정부 가축방역 인력 현황

연도별 지방정부 가축방역 인력

연도	가축방역관*			공수의** (가축방역관 위촉 / 전체)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정원	현원		
2020년	1,234	975	334	- / 893
2021년	1,217	906	389	- / 905
2022년	1,254	901	328	- / 945
2023년	1,214	821	309	- / 965
2024년	1,063	762	276	812 / 965
2025년	1,161	778	286	809 / 1,001

* (가축방역관)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중에서 임명·위촉(가전법 제7조)

(공수의) 동물진료 업무를 위하여 민간 수의사 중에서 위촉(수의사법 제21조)

** 공수의 중 가축방역관 위촉 현황은 2024년부터 조사

지방정부별 가축방역관 인력 현황 ('25년 12월 기준)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가축방역관 위촉)
	정원	현원		
합계	1,161	778	286	809
서울	37	33	-	4
부산	11	11	1	13
대구	35	32	2	22
인천	36	25	1	8
광주	17	11	-	5
대전	17	10	-	5
울산	19	16	1	2
세종	12	12	2	-
경기	137	101	42	139
강원	89	58	33	40
충북	75	53	22	56
충남	130	90	39	96
전북	102	66	33	79
전남	185	90	41	57
경북	104	74	36	174
경남	131	74	27	82
제주	24	22	6	27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